

제품안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1 움직이는 피사체의 유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전등을 ON/OFF하는 에너지 절약형 센서는 전기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분류항목과 시험기준명은 어떻게 되나요?

A1 '인체 유·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전등을 ON/OFF하는 센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중 '전기기기용 스위치(전자식 스위치)'에 해당됩니다.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K60669-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전기 설비용 스위치, 일반요구사항), K60669-2-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설비용 스위치, 전자스위치 개별 요구사항)입니다.

Q2 일본에서 업소용 초밥보관통과 야채 슬라이스기계를 수입하려 하는데 110V를 사용하고 전문업소용 제품인데 인증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2 초밥보관통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전기보온기'에 해당되며, '슬라이스기'도 동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품목이므로, 출고(통관)전에 안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Q3 전동기제품에 들어가는 3KW이하는 접지볼트가 신주볼트를 사용해야 한다는데 그런 규정이 있는지요?

A3 신주볼트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K60335-1의 27항(접지관련)과 28항(나사관련)에 관련 규정이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접지접속을 하는 부분은 충분한 내부식성을 가져야 하고, 그 부분이 강철로 되어 있는 경우 중요부분은 두께가 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전기도금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재질은 (주1) 동 또는 동합금인 부분으로서 저온상태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58%이상, 기타 부분에는 50%이상의 동을 함유하고 있는 부분 및 13% 이상의 크롬을 함유하고 있는 스테인레스강 부분은 내식성이 충분하다고 간주한다. (주2) 크롬산염가공 코팅 처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통상 부식방지 대책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간주하지 않으나. 접촉압력을 가하거나 전달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있다. (주3) 접지접속

을 하는 부분 및 접촉압력을 가하거나 전달하도록만 하는 부분의 예로서는 그림14를 참조할 것. (주) 가철부분에서는 특히 전류가 흐르는 부분이 중요부분이 된다. 중요부분이 타당하지의 조사에는 그 부분의 형상에 따른 코팅의 두께를 고려하여야 한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ISO 2178 또는 ISO 1463에 따라 코팅두께를 측정한다.

Q4 ‘어린이놀이기구’ 와 완구 중
‘미끄럼틀, 그네’ 등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A4 「안전인증 부속서 12」 ‘어린이놀이기구’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기구란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을 말하는 것으로 실내·외의 어린이놀이터에 고정시켜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한 번 설치되면 일반인이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구조를 변경하기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 놀이기구로는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정글짐, 구름다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36」 ‘완구’ 제6부에 따르면 가정용 그네, 미끄럼틀 및 유사호라동 완구는 가정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활동 완구를 말하는 것으로 학교, 유치원, 공공놀이터, 대형 쇼핑센터와 같은 곳에 설치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5 싱크대, 현관문 및 벽면에
포인트를 주고자 사용하는 PVC 재질의
시트지가 자율안전확인 품목인가요?

A5 ‘벽지 및 종이장판지’는 재질에 함유된 유해 화학물질의 양을 규제함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제품으로 주거의 편리 및 미관을 목적으로 실내의 벽, 천정에 붙이는 벽지 및 온돌에 사용되는 종이장판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싱크대, 현관문 및 벽면에 포인트를 주고자 사용하는 PVC 재질의 시트지는 자율안전확인대상 ‘벽지’에 해당됩니다.

